

##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

### (김도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7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5. 30.

발의자 : 김도운, 김태욱, 박경희,  
이명녀, 문희성, 정재환,  
문기호, 홍영진, 안영호,  
강혜순

#### 1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
홀로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내용과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안 제5조)
- 라. 동행매니저 자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병원동행서비스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동행매니저 수행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사. 예산의 지원과 지원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#### 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## 4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 2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

## 5. 참고사항

- 가. 조례안 예고: 2024. 5. 24. ~ 5. 29.(5일간) / 의견제출 1건
- 의견제출자: 허달호(의회사무국-3918호, 2024. 5. 29.)
  - 주요 내용: 병원동행서비스의 위탁 근거를 「사회복지사법」에서  
「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여 시설의  
범위 확대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흘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흘로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흘로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흘로사는 노인”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인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병원동행서비스”란 흘로사는 노인이 진료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흘로사는 노인을 동행하며,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동행매니저”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)**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흘로 사는 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· 시행해야 한다.

1.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
2.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
3.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
4. 그 밖의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항.

**제4조(지원내용)** ①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.

다만,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,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의 연간 지원 범위 내에서 그 횟수를 빼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제1항의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은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지원절차 등)** ①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.

다만,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의 적격 여부를

확인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.

**제6조(동행매니저 자격)**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3.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
4. 「의료법」 제2조,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

**제7조(병원동행서비스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복지시설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「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시설(장기요양기관, 장애인 활동지원기관, 사회복지관, 사회적 경제조직 등)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(이하 "수행기관"이라 한다)으로 선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,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.

**제8조(동행매니저 수행기관 선정 취소)**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 선정된 경우
2.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
3. 그 밖의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9조(예산의 지원)** ① 구청장은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 · 절차 · 방법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0조(지원 대상자 관리)** 구청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 · 보관 해야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 [별지 제1호서식]

##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

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		성별	남, 여
	주소					
	연락처					
신청인 (대리인)	성명		생년월일		성별	남, 여
	주소					
	연락처			대상자와의 관계		
담당자 작성	① 건강상태	※ 거동불편정도(혼자 외출가능,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, 혼자 외출 불가능) 등 질환 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합니다. - 장기요양등급자 제외				
	② 적정확인	※ 홀로 사는 노인 증빙자료(주민등록표 등본) 등				
	③ 지원상황	※ 다른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				

「울산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에 따라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: (서명 또는 인)

###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

신청인	1. 신청인 신분증
제출서류	2. 대리인 신분증(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등본
참고사항	1. 신청하는 곳: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2. 대리인의 범위: 신청인의 직계 존·비속, 4촌 이내의 인척
<p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p> <p>※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    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</p>	

#### ■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 [별지 제2호서식]

##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

## 관련법령

### 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### 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.

1.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
2. 영양관리
3. 신체활동장려
4. 구강건강의 관리
5.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

## 울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지원 조례(안)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4호
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  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 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
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 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 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2. 미첨부 사유

-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#### 3. 작성자

- 소 속 : 노인장애인과
- 직 급 : 지방행정주사
- 이 름 : 이 선 혜
- 연락처 : 290-3681